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 위험에 따른 농업인 등 경영안정 정책 수립〉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452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24.
3. 회 부 일 : 2026. 7.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유통·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가격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u>제13조의2(공급망 위험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유통·판매 가격과 물량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에 따른 공급망 위험<sup>1)</sup>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1)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급망 위험”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말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정의)

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개별 농업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서, 필수농자재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국회에서는 2024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비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sup>2)</sup>

2025년 12월에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26.12.17. 시행예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제3조),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제5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법령상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상승시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제7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10조)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정책 수립 의무를 농업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규정하려는 것으로,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개별법이라고 본다면,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련된 책무 규정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책의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사항은 별도의 개별법으로 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제2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나, 제3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제2장에서 농업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 개별 정책수단과 지원사항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예컨대 제2장에서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sup>3)</sup>고, 제3장에서는 식품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sup>4)</sup>하고 있는 구조임.

---

3)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

그런데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실태조사 등의 대책은 농업정책의 기본원칙이라기보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이라는 원칙<sup>5)</sup>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조문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관한 제3장 제5절에 신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 체계 ]

| 제2장                               |                                                  | 제3장                                |                                                        |
|-----------------------------------|--------------------------------------------------|------------------------------------|--------------------------------------------------------|
| 농업·농촌<br>및<br>식품산업<br>정책의<br>기본방향 | 제6조 정책 수립·시행의<br>기본원칙                            | 농업·농촌<br>및<br>식품산업<br>정책의<br>수립·시행 |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br>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                                   |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br>안정적 공급                           |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br>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
|                                   |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br>지속가능한 발전                        |                                    |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
|                                   |                                                  |                                    |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                                   |                                                  |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br>제39조 농업경영체의<br>경영안정 및<br>구조개선 등의 지원 |
|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br>증진             | 제40조 농업경영체의<br>경영정보 등록<br>제41조 농업 재해 등에<br>대한 시책 |                                    |                                                        |
|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br>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br>증진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br>삶의 질 향상          |                                                        |

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제2장 |                                             | 제3장 |                                    |
|-----|---------------------------------------------|-----|------------------------------------|
|     |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br>관련 단체의 육성                 |     | -                                  |
|     | 제11조의2 농림수산식품<br>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                                    |
|     |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농촌<br>및 식품산업 정책               |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농촌<br>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
|     |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br>(개정안) 제13조의2 공급망<br>위험 대응 |     | -                                  |

한편, 개정안은 비료·사료·농약 등을 필수농자재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농자재의 범위는 정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예시는 삭제하는 대신, 농업에 필수적이지만 필수농자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농업용에너지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비료와 사료를 제외한 필수농자재의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에 필수농자재뿐 아니라 농업용에너지도 포함하고 있음.<sup>6)</sup>

- 
- 6)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자재”란 농업에 사용되는 소모성 투입재를 말한다.
  4. “필수농자재”란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
  5. “농업용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다음 각 목의 에너지를 말한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 나.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

|              |
|--------------|
| 문 의 처        |
| 02)6788-5414 |